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. 6. 16 선고 2021가단1755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5. 26.

판 결 선 고 2021. 6. 1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8㎡ 지상의 무허가 목조시멘트기와잡 단층주택을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나. 2021. 2. 22.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5,254원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권순남

별지